

의안번호	제423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[총무과장 : 인 영 환]

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봉사,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장학생의 자격)
  - 제1호 : “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성적평균이 “미” 평정 이상인 자” 를 “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” 로 변경
  - 제3호 삭제
  - 제4호 삭제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본 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제2조 ‘이장자녀 장학금 장학생 자격조건’ 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